

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 역할과 과제

-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오후 3시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회의실(3층)
- 주최·주관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후원 |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 역할과 과제〉

사회자

장낙인(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전 우석대 교수)

발제자

김환표(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 사무처장)

토론자

정의철(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

이영원(KBS전주총국 시청자위원/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노현정(전주MBC 시청자위원/ 전북여성단체연합 전 사무처장)

김영기(JTV전주방송 시청자위원/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재홍(KBS전주총국 보도국장)

이종휴(전주MBC 경영국장)

서수권(JTV전주방송 편성국장)

2019-2020 전북 지역 지상파 방송 시청자위원회 현황 분석 및 제언¹⁾

김환표(전북민언론 전 사무처장)

들어가며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만든 법적 기구로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방송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위해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사업자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시청자위원을 구성할 것과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는 막중하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역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이나 운영의 실효성, 시청자위원회의 법적 직무 및 권한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1) 이 발제문은 전북민언련에서 2018년과 2019년에 발표한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현황 보고서'를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2019년과 2020년의 시청자위원회 현황 분석은 2019년부터 위원 교체가 마무리된 2020년 5월까지 전북지역 지상파방송 3사의 시청자위원회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과 관련해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예컨대 전북민언련은 2018년 ‘2017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역시청자 권익 첫걸음, 시청자위원회 개선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전북민언련은 시청자위원회 개선은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지와 변화를 바라는 시청자들의 열망을 담은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방송사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회의록 등 시청자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들이 최대한 공개되어야 하며 위원 구성부터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2018~2019년 지역지상파 3사의 시청자위원회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청자위원회의 내실화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개선점은 위원 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다. 각 사별로 운영규정이 개선된 점은 다음과 같다.

[전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기존 (2010.06.01 기준)	개정 (2018.10.01 개정)
<p>제6조 (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p>	<p>제6조 (시청자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p>
<p>제8조 (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최종 선정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경영기술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보도국장, 편성제작국장, 광고사업국장 등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분야가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사장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제8조 (시청자위원 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회사측 경영기술국장, 보도국장, 편성제작국장 3인과 노동조합측 사무국장, 민실위 간사(보도, 편성 각 1명) 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운영부서의 국장(경영기술국장)이 한다. ③ 시청자위원은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시청자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분야가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다.	⑤ 시청자위원 선정 후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11조 (시청자위원회 운영) ①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위원들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한다. ⑤ 시청자위원회 회의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내용, 방송사의 답변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⑥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⑦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한다.
부 칙	부 칙 5. (출석의무) 시청자위원이 최근 1년간 시청자위원회 회의에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원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위해 선정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수 있다.

[JTV전주방송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기존 (2011.01.01)	개정 (2019.01.01)
제5조(후보자 추천) ①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단체 10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어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추천단체 10개 분야 중 추천이 없는 분야의 단체에는 추천을 직접 의뢰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 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해당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	제6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

<p>단되는 자</p>	<p>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p>
<p>제8조(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최종 선정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표 이사로서 하며, 위원은 방송본부장, 경영기획국장, 보도국장, 편성제작국장, 기술국장, 홍보심의실장 등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10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제8조(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① 시청자선정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표 이사로서 하며, 위원은 방송본부, 경영기획국, 보도국, 편성제작국, 기술국, 심의실 등 부서장급 이상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당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⑤ 방송사업자는 위원 선정 후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p>
<p>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p>	<p>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거나 전자문서 또는 전화를 통해 통보하도록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내부구성원 및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p>

[KBS전주총국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기존 (2006.07.12 기준)	개정 (2018.06.27 개정)
<p>제6조(위촉) ① 사장은 시청자를 대표 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2.9.25>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관련 기관 또는 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개정 2005.2.25> 10. 과학기술관련단체 <신설 2005.2.25>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p>	<p>제6조(위촉) ① 사장은 시청자를 대표 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 제6조의 2에서 규정한 선정위원회를 거쳐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2.9.25.><개정 2018.6.27>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관련 기관 또는 단체 9. 경제단체 <개정2005.2.25.><개정2018.6.27> 10. 과학기술관련 단체<신설2005.2.25.> 11. 문화단체<신설2018.6.27></p>

<p>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p><신설 2005.2.25></p> <p>③ 제1항의 시청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02.9.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개정 2006.7.12> 2.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3. 방송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방송사 및 방송물 제작사의 임직원, 방송광고공사, 광고대행사, 방송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의 임직원. 4.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5.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신설 2006.7.12> 	<p>12. 인권단체<신설2018.6.27></p> <p>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27></p> <p>③ 제1항의 시청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02.9.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개정 2006.7.12> 2.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3.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방송사 및 방송물 제작사의 임직원, 방송광고공사, 광고대행사, 방송기자재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임직원 <직권개정 2008.2.29> 4.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5.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신설 2006.7.12> <p>④ 시청자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한다. <신설 2018.6.27></p> <p>제6조의 2(선정위원회) 공정하고 투명한 시청자위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정위원회를 둔다.<신설 2018.6.27></p> <p>① 선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시청자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사장(위원장), 방송본부장, 시청자본부장 2. TV, 보도, 라디오 편성위원회 책임자 각1인 및 실무자 대표 각 1인 <p>② 선정위원회는 시청자위원 임기 시작 1개월 전까지 구성한다.</p>
	<p>제12조(지역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역(총)국장은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6.27></p> <p>② 지역 시청자위원회는 본사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을 참고하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18.6.27></p>

1.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1) 자료 공개 현황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만큼 시청자들이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위원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시청자위원 추천 단체와 추천 분야에 대한 정보 역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시청자위원의 발언과 이에 대한 방송사의 답변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한 각 사의 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전주MBC: 제11조 (시청자위원회 운영)

- ⑤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 방송사의 답변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 ⑥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JTV전주방송: 제11조(위원회 운영)

- 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내부 구성원 및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KBS전주총국: 특별한 운영 규정 없음.

전북지역 지상파방송 3사는 현재 시청자위원회 코너 및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월별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공개 현황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KBS전주총국은 운영 규정, 회의록,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추천 단체와 추천분야는 비공개하고 있다. JTV전주방송 역시 위원 명단과 사진, 회의록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전주MBC는 회의록 내에서 위원 명단, 추천단체, 추천분야, 직업, 임기를 전부 공개하고 있어 내실은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시청자위원 명단을 공개한 별도의 게시판이 홈

페이지에 없으며,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선 전주MBC 홈페이지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회의록 형태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KBS전주총국은 2018년부터 전주MBC는 2019년부터 의견 요약형에서 속기형으로 바꾸었지만 JTV전주방송은 여전히 의견 요약형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자료 공개 현황 (2017-2020)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17~2018	2018~2019	2019~2020
운영 규정	공개			비공개	공개	공개	공개		
회의록 형태	의견 요약형	속기형	속기형	의견 요약형	의견 요약형	속기형	의견 요약형	의견 요약형	의견 요약형
위원 명단	이름, 직업, 사진 공개,			홈페이지 별도 코너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회의록 내에 위원 명단 공개되어 있음. (이름, 직업, 추천단체, 추천분야 공개, 2017년엔 추천단체 비공개)			이름, 사진만 공개		
담당자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홈페이지 공개 여부 기준

1-1) 각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 운영 세부 현황

■ KBS전주총국

	공개	비공개
운영규정	○	
위원명단	○ (이름, 사진, 성별, 직업 공개)	
회의록	○	
담당자		○

■ 전주MBC

	공개	비공개
운영규정	○	
위원명단		위원명단 별도 공개 없음 홈페이지에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회의록이 공개되며 회의록 내에 위원의 직업, 분야, 추천단체, 임기를 공개하고 있음
회의록	○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2019년 7월부터 회의록 형태가 시청자위원회 속기 형태로 바뀜)	
담당자		○

■ JTV전주방송

	공개	비공개
운영규정	○	
위원명단	○ (이름, 사진 공개)	
회의록	○ (의견 취합형)	
담당자		○

2) 월별 회의 진행 현황

각 사의 운영 규정을 보면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KBS전주총국: 제11조 (시청자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 ②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전주MBC: 제11조 (시청자위원회 운영)

- ①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위원들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JTV전주방송: 제11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거나 전자문서 또는 전화를 통해 통보하도록 한다.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은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왔다. JTV전주방송은 모두 대면회의로 진행했지만 전주MBC의 경우엔 일부 회의를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서면회의’임을 기재하지 않았다.

KBS전주총국은 2017년 4번, 2018년 2번, 2019년 1번 등 회의를 미개최하거나 취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령 2017년도에는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으로 인한 제작 거부로 시청자위원회를 미 개최했으나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KBS전주총국은 매월 정기적으로 시청자위원회 회의 진행은 고지했으나 시청자 안건을 제시하지 않는 견학 또는 간담회를 진행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2018년에는 2월, 4월, 8월, 12월 경우 회의록이 없는데, 2월은 간담회, 4월과 8월은 회의 취소, 12월은 감사패 전달로 대신 진행하며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 8월에도 회의를 미개최하면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2. 전라북도 지역 방송사별 시청자 위원회 월별 회의 진행 현황(2017-2019)

	2017	2018	2019
KBS전주총국	12(7/4/1)	12(8/2/2)	12(11/1/0)
전주MBC	12(12/0/0)	12(12/0/0)	12(12/0/0)
JTV전주방송	12(12/0/0)	12(12/0/0)	12(12/0/0)

※ 전체 회의 수(대면·서면 진행/ 회의 취소/ 견학 등 기타)

3) 시청자위원의 다양성 및 대표성

각 사의 운영 규정을 보면 시청자위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KBS전주총국: 제6조(위촉) ① 사장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 제6조의 2에서 규정한 선정위원회를 거쳐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시청자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한다.

■ 전주MBC: 제7조 (후보자 선정)

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

■ JTV전주방송: 제7조(후보자 선정)

- 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2배수 이상으로 한다.

3-1) 시청자위원의 성비 불균형

전북지역 지상파방송 시청자위원의 2018~2020년 성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 72.7%, 여성 27.3%로, 여전히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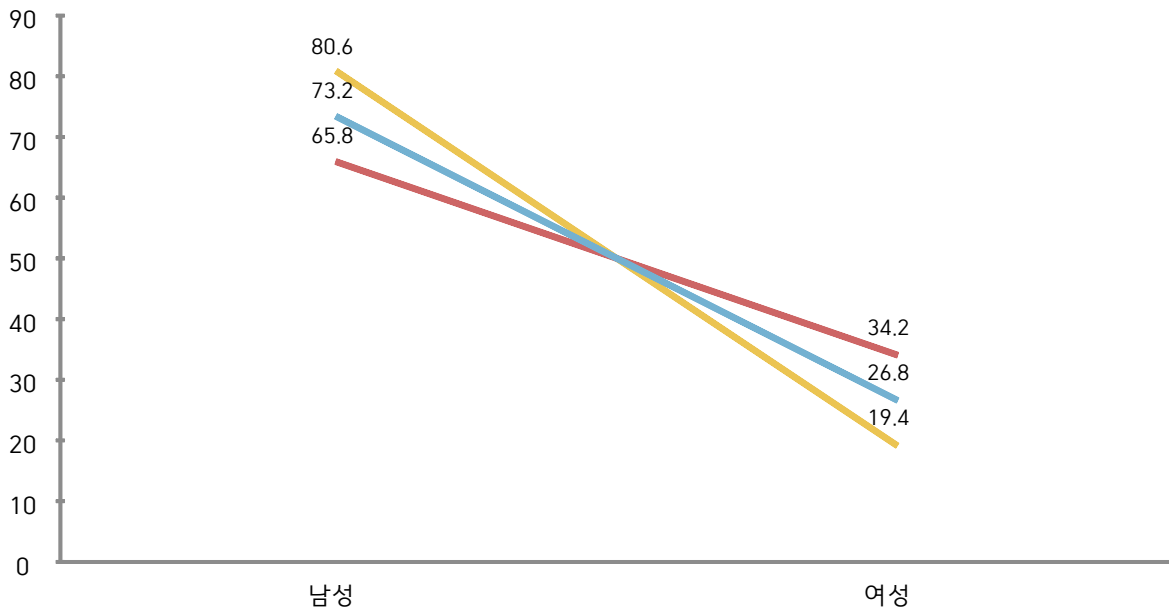
각 방송사별 성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3년 평균 KBS전주총국은 남성 73.2%, 여성 26.8%, 전주MBC는 남성 65.8%, 여성 34.2%, JTV는 남성 80.6%, 여성 19.4%였다. 2020년 기준 여성 비율은 KBS전주총국 31%, 전주MBC 36%로 두 방송사는 성비 불균형을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지만 JTV전주방송은 여전히 22%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표3. 전라북도 지역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 구성 성비 (2018-20205) (단위: 명)

방송사별		남	비율	여	비율
KBS전주총국	2018	11	79%	3	21%
	2019	10	71%	4	29%
	2020	9	69%	4	31%
KBS전주총국 3년 평균		30	73.2%	11	26.8%
전주MBC	2018	10	71%	4	29%
	2019	8	62%	5	38%
	2020	7	64%	4	36%
전주MBC 3년 평균		25	65.8%	13	34.2%
JTV전주방송	2018	9	82%	2	18%
	2019	9	82%	2	18%
	2020	7	78%	2	22%
JTV 3년 평균		25	80.6%	6	19.4%
전북 방송 3사 3년 평균		80	72.7%	30	27.3%

※ 2020년은 위원 교체가 마무리 된 5월을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전북 방송사별 성비 구성 3년 평균(%)



3-2) 직업별 불균형

전북지역 지상파방송 3사 위원을 직업별로 나눠 살펴보면, 2019년은 교수(총장 포함) → 단체·협회(장) → 시민사회단체 순이었으며, 2020년은 교수(총장 포함)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단체·협회(장)가 공동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교수(총장 포함)와 단체·협회(장)가 시청자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변호사와 의료인 등 전문직의 비중이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2019년부터 인권 및 사회적 취약계층 분야별 위원 위촉이 증가하면서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표4. 전라북도 지역 방송사별 시청자위원 직업별 비중 (2019-2020) (단위: 명, %)

	총원			비율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교수 (총장포함)	13	10	9	33.3%	28.6%	27.3%
기업(경제인)+공공기관(장)+ 단체·협회(장)	10	10	8	23.1%	31.4%	24.2%
변호사+의료인+회계사+언론인	6	4	4	15.4%	11.4%	12.1%
합계	29	24	21	71.8%	71.4%	63.6%
시민사회단체+학부모	3	5	7	7.7%	14.3%	21.2%
교사강사+학화·학자	3	3	4	7.7%	8.6%	12.1%
작가예술인	5	2	1	12.8%	5.7%	3.0%
합계	11	10	12	28.2%	28.6%	36.4%

각 사별 특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KBS전주총국은 교수(총장 포함)가 가장 높았으며, 단체·협회(장)의 비중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 2개의 직업군이 50%를 넘어설 만큼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호사, 의료인 등 전문직을 꾸준히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MBC 역시 교수(총장 포함)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19년부터 시민단체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적으로 늘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소외계층, 노동, 인권 분야 등에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결과로 해석된다.

JTV전주방송 역시 교수(총장 포함)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JTV전주방송의 경우엔 기업(경제인)과 공공기관(장), 단체·협회(장)를 꾸준히 위원으로 위촉해왔다. 이 4개의 직업이 시청자위원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원 한 명도 민간 미술관 관장임을 감안할 때 위원의 약 90%가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표5. 지역 방송사별 시청자위원 직업별 구성 현황 (2019-2020) (단위: 명, %)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총원			비율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교수 (총장포함)	7	4	4	3	3	2	3	3	3	13	10	9	33.3%	28.6%	27.3%
기업 (경제인)							3	1	1	3	1	1	7.7%	2.9%	3.0%
공공기관 (장)							2	2	1	2	2	1	5.1%	5.7%	3.0%
단체·협회 (장)	1	4	4	3	1			3	2	4	8	6	10.3%	22.9%	18.2%
변호사	1	1	1	1	1	1				2	2	2	5.1%	5.7%	6.1%
의료인	1	1	1	1	1	1				2	2	2	5.1%	5.7%	6.1%
회계사	1									1	0	0	2.6%	0.0%	0.0%
언론인				1						1	0	0	2.6%	0.0%	0.0%
작가, 예술인	1			2	1		2	1	1	5	2	1	12.8%	5.7%	3.0%
시민사회단체	1	1	1	1	2	4	1	1	1	3	4	6	7.7%	11.4%	18.2%
교사, 강사	1	1	1	1	1	2				2	2	3	5.1%	5.7%	9.1%
학회, 학자		1	1	1						1	1	1	2.6%	2.9%	3.0%
학부모					1	1				0	1	1	0.0%	2.9%	3.0%
종합	14	13	13	14	11	11	11	11	9	39	35	33	100%	100%	100%

※2019년 12월, 2020년 4~5월 위원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직업별 분류는 위원회에서 공개한 대표 직업으로 분류했습니다.

4) 위원 추천 분야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따르면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 단체
12. 인권단체
- 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14. 물류·유통 관련 단체[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각 사별 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전주MBC: 제5조 (후보자 추천)

- ①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JTV전주방송: 제5조(후보자 추천)

-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 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KBS전주총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를 적용하고 있음.

전북지역 지상파방송 3사의 각 사별 특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총 13명으로 구성된 KBS전주총국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였다. KBS전주총국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4명이 문화 분야 위원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KBS전주총국의 경우, 3년간 경제 분야 위원은 지속적으로 위촉했으면서도 노동 분야는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과 학부모, 인권, 언론 관련 시민·학술 분야는 3년간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JTV전주방송(2018~2019년에는 11명, 2020년 9명) 역시 문화 분야 위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JTV전주방송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는 4명, 2020년에는 3명이 문화 분야 위원이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과 2019년은 36.4%(11명 중 4명), 2020년은 33%(9명 중 3명)다.

JTV전주방송에서는 또 경제 분야의 비중이 높았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27.3%(11명 중 3명), 2020년에는 33%(9명 중 3명)의 비중을 차지했다. JTV전주방송은 3년 동안 소비자 보호, 언론 관련 시민·학술, 노동, 경제, 문화 분야에서만 위원을 위촉했을 뿐 학부모, 여성, 청소년, 변호사, 학술, 시민, 과학기술, 인권 분야에서 한 명도 위촉하지 않았다. 또 노조 추천으로 노동 분야에 위촉된 위원이 존재하긴 하지만 직업군은 교수로 되어 있어 노동 분야에 맞는 위원인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해 보인다.

전주MBC는 특별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시청자위원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엔 언론 관련 시민·학술 분야가 3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한 명으로 축소되는 등 분야별로 고르게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사회소외계층, 노동 분야에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으며, 인권 분야

위원을 2019년 1명에서 2020년 2명으로 늘리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위촉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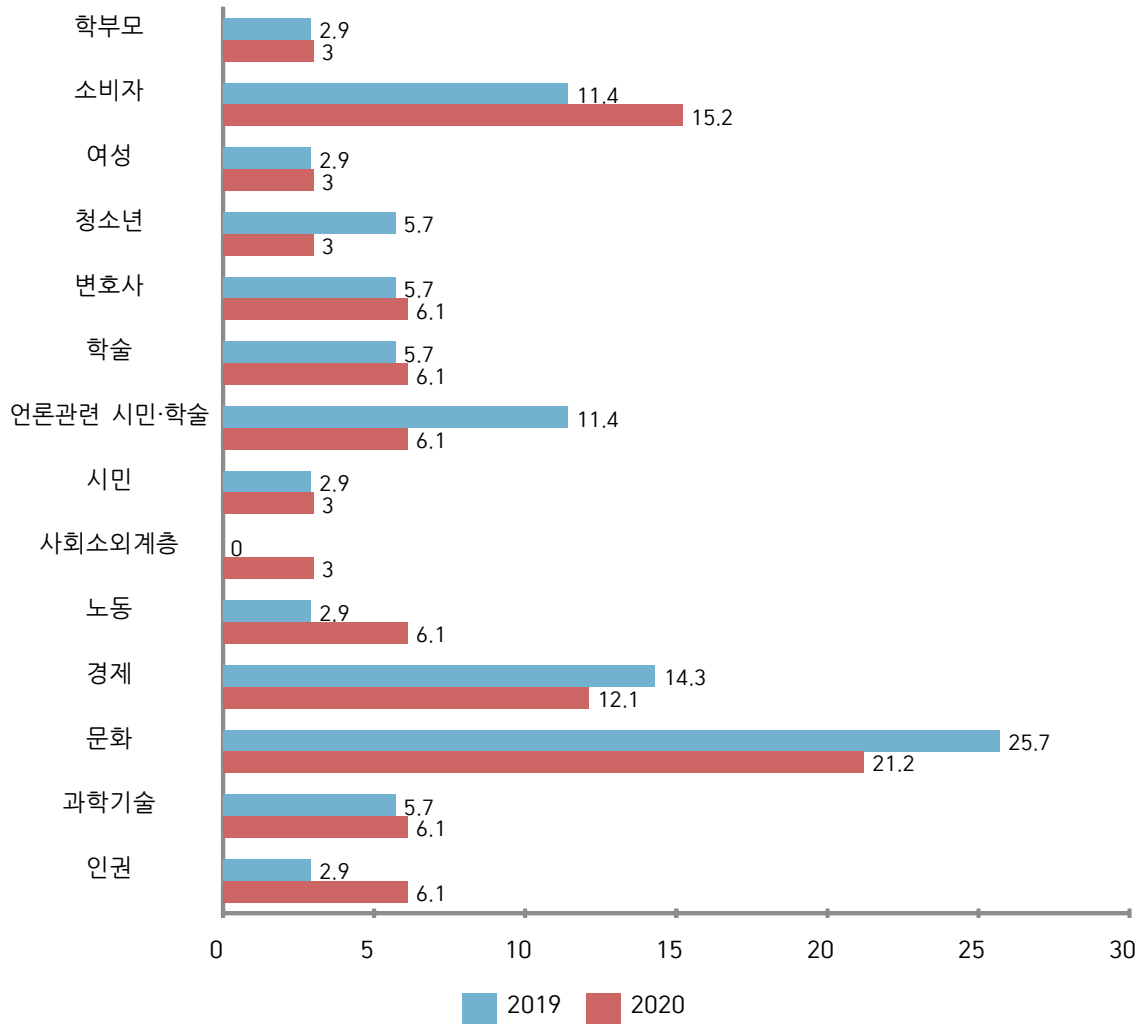
표6. 전라북도 지역 방송사별 위원 추천 현황 (2018-2020) (단위: 명)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총원		비율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학부모				1	1	1				1	1	2.9%	3.0%	
소비자 보호		2	2	1	1	2	1	1	1	4	5	11.4%	15.2%	
여성				2	1	1				1	1	2.9%	3.0%	
청소년		1	1	1	1					2	1	5.7%	3.0%	
변호사		1	1	1	1	1				2	2	5.7%	6.1%	
학술		2	2							2	2	5.7%	6.1%	
언론관련 시민·학술	자료 없음			3	2	1	2	2	1	4	2	11.4%	6.1%	
시민		1	1							1	1	2.9%	3.0%	
사회소외 계층				1		1				0	1	0.0%	3.0%	
노동						1	1	1	1	1	2	2.9%	6.1%	
경제		1	1	1	1		3	3	3	5	4	14.3%	12.1%	
문화		4	4	2	1		4	4	3	9	7	25.7%	21.2%	
과학기술		1	1	1	1	1				2	2	5.7%	6.1%	
인권					1	2				1	2	2.9%	6.1%	
총원		-	13	13	14	11	11	11	11	9	35	33	100%	100%

※ 각 방송사가 나눈 분야별로 작성한 표입니다.

※2019년 12월, 2020년 4~5월 위원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방송사별 위원 추천 현황 (단위: %)



5)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 제시 의견의 조치 결과 현황 (2018-2020)

2019년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들을 살펴보면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36%, 정보,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31%로 2018년보다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2018년 보도 및 시사 32%, 교양 35%)

연예·오락·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해당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어려운 지역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KBS전주총국의 경우만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뿐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의 경우 시청자위원들의 평가가 대부분 TV 프로그램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청자위원의 의견 제시 횟수는 2019년 전주MBC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BS전주총국은 90건, JTV전주방송은 77건이었다. 특히 KBS전주총국은 2018년 회의록에 공개된 20건의 의견 제시 횟수가 2019년은 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7.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제시 의견의 항목별 현황(2019) (단위: 건)

방송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내용					기타 (기술, 운영, 문화 등)	계
		보도, 시사	정보,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라디오	기타		
KBS전주총국		34	24		6	11	15	90
전주MBC	6	35	37				33	111
JTV전주방송		32	25				14	77
계	6	101	86		6	11	62	278
비율	2%	36%	31%	0%	2%	4%	22%	100%

※ KBS전주총국은 2019년 1월 각 위원 역할 분담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하지 않음

시청자위원의 제시 의견에 전북지역 지상파방송 3사는 대부분 수용(56%)하거나 참고(37%)했으며 반론을 한 경우는 7%로 나타났다. 특히 JTV전주방송은 모든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BS전주총국은 2019년 19건의 반론을 했으며, 전주MBC 역시 2019년 4건의 반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의 반론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내용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8.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 제시 의견 조치결과 (2018-2019) (단위: 건)

방송사	수용(조치)		반론		참고		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KBS전주총국	16	44	-	19	4	69	20	132
전주MBC	50	60	-	4	24	47	74	111
JTV전주방송	67	74	-	-	1	-	68	74
합계(건)	133	178	-	23	29	116	162	317
비율(%)	82%	56%	0%	7%	18%	37%	100%	100%

※ KBS전주총국은 2018년 회의록 작성 시 수용, 반론, 참고 결과를 회의록에 직접 표시하지 않아 작성자가 직접 내용을 읽어보고 임의로 판단하여 분석했습니다.

※ 전주MBC의 경우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2019년 7월부터 각 위원들이 발언한 녹취록 형태로 변경하면서, 각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으나 반대급부로 제시 의견 항목별 현황과 조치 현황이 사라져,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뉘었습니다. 위 표를 만들 때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 방송사가 보고하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제시 의견과 조치 결과의 전체 합계가 다른 이유는 KBS전주총국의 경우 수용, 참고 / 참고, 반론 / 수용, 참고, 반론 등 각 시청자위원의 의견에 여러 조치를 같이 한 경우가 있어 각각 덧붙여 계산하였습니다. JTV 시청자위원회 조치결과에서 2명의 위원이 지적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수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의견 수에 비해 조치 결과 현황이 3개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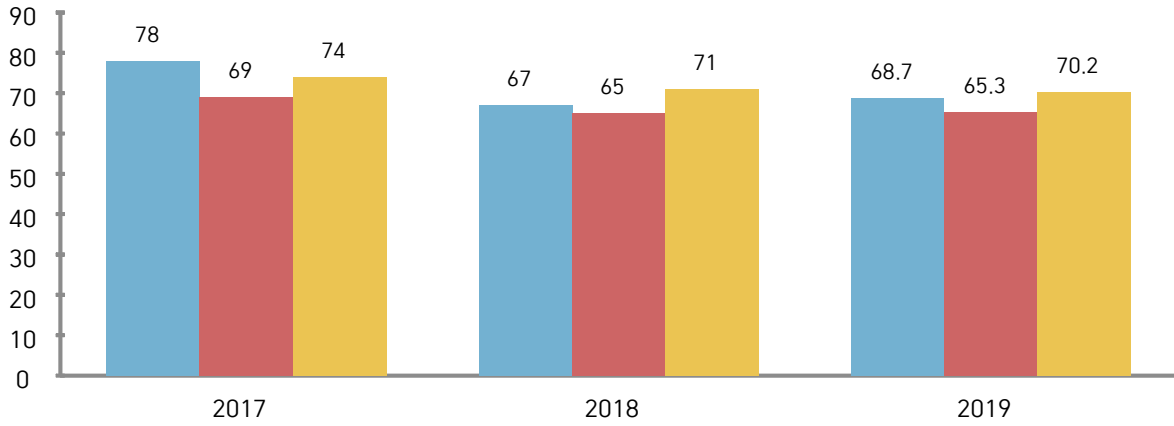
6) 시청자 위원 연도별 평균 출석률

시청자위원의 출석률은 문제가 적지 않았다. JTV전주방송만 유일하게 3년(2017~2019) 연속 70%대를 기록했다. KBS전주총국은 2017년 70%를 넘겼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60%대를 기록했으며, 전주MBC는 3년(2017~2019)간 60%대에 머물러 출석률이 가장 저조했다.

표9. 전라북도 지역방송사별 시청자 위원 회의 참석률 (2017-2019) (단위: %)

	2017	2018	2019
KBS전주총국	78%	67%	68.7%
전주MBC	69%	65%	65.3%
JTV전주방송	74%	71%	70.2%

전라북도 지역방송사별 시청자 위원 회의 참석률 (2017-2019) (단위: %)



※ 시청자 위원 수: 2019년 1~9월(14명) / 10월~12월(13명) / 2020년 1~5월(13명)

표10. KBS전주총국 회의 진행 현황(2019)

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	참석률
1월	1월 21일(월)	전주총국 7층 대회의실	20명(위원 12명, 직원 8명)	86%
2월	2월 18일(월)	전주총국 7층 대회의실	16명(위원 8명, 직원 8명)	57%
3월	3월 18일(월)	전주총국 7층 대회의실	21명(위원 12명, 직원 9명)	86%
4월	4월 15일(월)	전주총국 7층 대회의실	20명(위원 11명, 직원 9명)	79%
5월	5월 27일(월)	김제 신세계병원	20명(위원 11명, 직원 9명)	79%
6월	6월 17일(월)	전주총국 7층 대회의실	18명(위원 9명, 직원 9명)	64%
7월	7월 15일(월)	전주총국 7층 대회의실	18명(위원 9명, 직원 9명)	64%
8월	미 개최			
9월	9월 16일(월)	전주총국 7층 대회의실	18명(위원 9명, 직원 9명)	64%
10월	10월 21일(월)	전주대학교 본관	19명(위원 10명, 직원 9명)	77%
11월	11월 18일(월)	전주총국 7층 대회의실	16명(위원 7명, 직원 9명)	54%
12월	12월 16일(월)	전주총국 7층 대회의실	14명(위원 6명, 직원 8명)	46%

※ 시청자 위원 수: 2019년 1~9월(14명) / 10월~12월(13명)

※ 참석률(참석한 시청자위원 수/ 전체 시청자위원 수)

표11. 전주MBC 회의 진행 현황(2019)

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	참석률
1월	1월 15일(화)	전주MBC 회의실	13명(위원 8명, 직원 5명)	57%
2월	2월 19일(화)	전주MBC 회의실	17명(위원 9명, 직원 8명)	64%
3월	3월 29일(금)	전주MBC 회의실	14명(위원 9명, 직원 5명)	69%
4월	4월 16일(화)	전주MBC 회의실	16명(위원 11명, 직원 5명)	85%
5월	5월 16일(목)	전주MBC 회의실	13명(위원 8명, 직원 5명)	62%
6월	6월 19일(수)	전주MBC 회의실	16명(위원 10명, 직원 6명)	77%
7월	7월 17일(수)	전주MBC 회의실	15명(위원 10명, 직원 5명)	77%
8월	8월 21일(수)	전주MBC 회의실	12명(위원 7명, 직원 5명)	54%
9월	9월 18일(수)	전주MBC 회의실	13명(위원 8명, 직원 5명)	73%
10월	10월 29일(화)	전주MBC 회의실	11명(위원 6명, 직원 5명)	55%
11월	11월 20일(수)	전주MBC 회의실	11명(위원 6명, 직원 5명)	55%
12월	12월 18일(수)	전주MBC 회의실	11명(위원 6명, 직원 5명)	55%

※ 시청자 위원 수: 1~2월(14명) / 3월~8월(13명) / 9월~12월(11명)

※ 참석률(참석한 시청자위원 수/ 전체 시청자위원 수)

표12. JTV전주방송 회의 진행 현황(2019)

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	참석률
1월	1월 28일(월)	JTV전주방송 대회의실	15명(위원 9명, 직원 6명)	75%
2월	2월 18일(월)	JTV전주방송 대회의실	16명(위원 9명, 직원 7명)	75%
3월	3월 12일(화)	JTV전주방송 대회의실	13명(위원 7명, 직원 6명)	58%
4월	4월 22일(월)	JTV전주방송 대회의실	16명(위원 10명, 직원 6명)	83%
5월	5월 13일(월)	모악산 송신소	14명(위원 9명, 직원 5명)	75%
6월	6월 17일(월)	JTV전주방송 대회의실	14명(위원 8명, 직원 6명)	67%
7월	7월 15일(월)	JTV전주방송 대회의실	14명(위원 8명, 직원 6명)	67%
8월	8월 19일(월)	JTV전주방송 대회의실	14명(위원 8명, 직원 6명)	67%
9월	9월 23일(월)	JTV전주방송 대회의실	16명(위원 9명, 직원 7명)	75%
10월	10월 21일(월)	JTV전주방송 대회의실	13명(위원 7명, 직원 6명)	58%
11월	11월 18일(월)	군산대학교 소회의실	14명(위원 8명, 직원 6명)	67%
12월	12월 23일(월)	JTV전주방송 대회의실	15명(위원 9명, 직원 6명)	75%

※ 시청자 위원 수: 2019년 1~12월(11명)

※ 참석률(참석한 시청자위원 수/ 전체 시청자위원 수)

2019년 임기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 출석률이 50% 미만인 위원들도 각 사마다 존재했다.

KBS전주총국의 경우엔 무려 3명이 50% 미만을 기록했다. 2명은 42%(5회), 1명은 17%(2회)를 기록했다. 출석률이 50%를 기록한 위원도 1명 있어 사실상 시청자위원 4명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KBS전주총국의 2019년 12월 회의는 13명 중 6명만 참석해 참석률이 과반을 넘지 못했는데, 이는 KBS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사) 1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해석하기에 따라 KBS전주총국이 2019년 12월에 진행한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주MBC의 경우엔 무려 6명이 50% 미만을 기록했다.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임기인 13명 중 4명이 42%(5회), 1명이 33%(4회), 1명이 25%(2회)였다. 또한 2019년 2월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 6명 중 4명은 2번의 회의 중 1회만 참석했으며, 1명은 2번의 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JTV전주방송의 경우엔 출석률 50% 미만을 기록한 위원이 1명(42%, 5회)이며, 50%를 기록한 위원도 1명 있었다.

출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연임되는 문제는 방송 3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JTV전주방송엔 해촉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전주MBC의 경우, 2018년 10월 개정된 규정에서 ‘출석 의무’ 조항을 신설해 최근 1년간 시청자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에 선정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오며

전북지역 지상파 3사는 2018~2019년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청자위원회의 내실화에 나섰다. 기존과 견주면 장족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시청자위원은 시청자를 대표하는 만큼 시청자들이 시청자위원과 시청자위원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데 장애가 없도록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과거에 견주어 전체적으로 공개 수준이 향상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자료는 정보가 차등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에서 공개한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얻기 위해선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은 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MBC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 보이며,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은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추천분야, 직업, 임기 등을 공개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시청자위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해야 할 것이다. KBS전주총국은 “시청자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은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운영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음에도 사실상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청자위원회 내실화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비 균형과 직업별 다양성, 나아가 연령별 다양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KBS전주총국은 교수와 전문가 그룹 등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의 직업별 불균형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JTV전주방송 역시 기업(경제인)과 공공기관(장), 단체·협회(장)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 점에선 사회소외계층, 노동, 인권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전주MBC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시청자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선 시청자위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시청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저조한 출석률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방송사는 운영 규정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을 추천한 단체나 기관에게도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나마 추천을 받지 않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별첨 1] KBS전주총국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기존 (2006.07.12 기준)	개정 (2018.06.27 개정)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 방송위원회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7.19></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제90조와 법 시행령 제64조,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권개정 2008.5.19.> <직권개정 2015.9.9> <개정 2018.6.27></p>
<p>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2000.7.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p>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2000.7.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7.19></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장이 된다.<개정 2000.7.19></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7.19></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장이 된다.<개정 2000.7.19></p>
<p>제4조(세칙제정)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제4조(세칙제정)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7.19></p>	<p>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7.19></p>
<p>제6조(위촉) ① 사장은 시청자를 대표 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2.9.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관련 기관 또는 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개정 2005.2.25> 10. 과학기술관련단체 <신설 2005.2.25> <p>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p><신설 2005.2.25></p> <p>③ 제1항의 시청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02.9.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개정 2006.7.12> 2.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p>제6조(위촉) ① 사장은 시청자를 대표 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 제6조의 2에서 규정한 선정위원회를 거쳐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2.9.25.><개정 2018.6.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관련 기관 또는 단체 9. 경제단체 <개정2005.2.25.><개정2018.6.27> 10. 과학기술관련 단체<신설2005.2.25.> 11. 문화단체<신설2018.6.27> 12. 인권단체<신설2018.6.27> <p>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27></p> <p>③ 제1항의 시청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02.9.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개정 2006.7.12> 2.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p>3. 방송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방송사 및 방송물 제작사의 임직원, 방송광고공사, 광고대행사, 방송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의 임직원.</p> <p>4. 타방송사 시청자위원</p> <p>5.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 <신설 2006.7.12></p>	<p>3.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방송사 및 방송물 제작사의 임직원, 방송광고공사, 광고대행사, 방송기자재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임직원 <직권개정 2008.2.29></p> <p>4. 타방송사 시청자위원</p> <p>5.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 <신설 2006.7.12></p> <p>④ 시청자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한다. <신설 2018.6.27></p> <p>제6조의 2(선정위원회) 공정하고 투명한 시청자위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정위원회를 둔다.<신설 2018.6.27></p> <p>① 선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시청자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 부사장(위원장), 방송본부장, 시청자본부장</p> <p>2. TV, 보도, 라디오 편성위원회 책임자 각1인 및 실무자 대표 각 1인</p> <p>② 선정위원회는 시청자위원 임기 시작 1개월 전까지 구성한다.</p>
<p>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도 제6조 1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25></p> <p>② 사장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19></p> <p>③ <삭제 2000.7.19></p>	<p>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도 제6조 제1항에 의한다. <개정2005.2.25.>,<개정 2018.6.27></p> <p>② 사장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19></p> <p>③ <삭제 2000.7.19></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p>
<p>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p> <p>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p> <p>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p> <p>②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p>	<p>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p> <p>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p> <p>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p> <p>②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사)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사)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지역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역(충)국장은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6.27></p>

	② 지역 시청자위원회는 본사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을 참고하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18.6.27>
부 칙 (2006.7.12) 이 규정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27) 이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임기) 1항은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전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기존 (2010.06.01 기준)	개정 (2018.10.01 개정)
<p>제1조 (목적) 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 87조 및 제 88조, 동법 시행령 제 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 87조 및 제 88조, 동법 시행령 제 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프로그램과 연관된 제반 건의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p>	<p>제2조 (권한과 직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프로그램과 연관된 제반 건의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p>
<p>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장이 된다.</p>	<p>제3조 (시청자위원회 구성) ①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장이 된다.</p>
<p>제4조 (후보자 공모)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4조 (후보자 공모)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5조 (후보자 추천) ①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p>	<p>제5조 (후보자 추천) ①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p>
<p>제6조 (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p>	<p>제6조 (시청자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p>

<p>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p> <p>3. 정당법에 의한 당원</p> <p>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p>	<p>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p> <p>3. 정당법에 의한 당원</p> <p>4. 기타 해당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p> <p>5.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p>
<p>제7조 (후보자 선정)</p> <p>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배수 이상으로 한다.</p>	<p>제7조 (후보자 선정)</p> <p>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배수 이상으로 한다.</p>
<p>제8조 (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p> <p>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최종 선정한다.</p> <p>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경영기술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보도국장, 편성제작국장, 광고사업국장 등 3명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분야가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④ 사장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제8조 (시청자위원 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p> <p>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회사측 경영기술국장, 보도국장, 편성제작국장 3인과 노동조합측 사무국장, 민실위 간사(보도, 편성 각 1명) 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운영부서의 국장(경영기술국장)이 한다.</p> <p>③ 시청자위원은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④ 시청자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분야가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⑤ 시청자위원 선정 후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사항은 제외한다)</p>
<p>제9조 (임기)</p> <p>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p>	<p>제9조 (임기)</p> <p>① 시청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p> <p>② 시청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p> <p>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p> <p>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1조 (위원회 운영)</p> <p>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p>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p> <p>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한다.</p>	<p>제11조 (시청자위원회 운영)</p> <p>①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p>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위원들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한다.</p> <p>⑤ 시청자위원회 회의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내용, 방송사의 답변내용</p>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⑥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⑦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12조 (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4. (품위유지) 시청자위원이 시청자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사안이 발생할 시 선정위원회에서 해촉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개인의 임기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4. (품위유지) 시청자위원이 시청자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사안이 발생할 시 선정위원회에서 해촉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5. (출석의무) 시청자위원이 최근 1년간 시청자위원회 회의에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원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위해 선정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수 있다.

[별첨 3] JTV전주방송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기존 (2011.01.01)	개정 (2019.01.01)
제1조(목적) JTV 전주방송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 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JTV전주방송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 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 선임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 선임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후보자 공모)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	제4조(후보자 공모)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

<p>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5조(후보자 추천) ①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단체 10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어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추천단체 10개 분야 중 추천이 없는 분야의 단체에는 추천을 직접 의뢰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p>	<p>제5조(후보자 추천)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p>
<p>제6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해당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p>	<p>제6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p>
<p>제7조(후보자 선정) 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2배수 이상으로 한다.</p>	<p>제7조(후보자 선정) 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2배수 이상으로 한다.</p>
<p>제8조(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 선정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최종 선정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표 이사로 하며, 위원은 방송본부장, 경영기획국장, 보도국장, 편성제작국장, 기술국장, 홍보심의실장 등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10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제8조(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① 시청자선정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표 이사로 하며, 위원은 방송본부, 경영기획국, 보도국, 편성제작국, 기술국, 심의실 등 부서장급 이상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당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⑤ 방송사업자는 위원 선정 후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p>
<p>제9조(임기) ① 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p>	<p>제9조(임기) ① 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시 정해진 임기는 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한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p>	<p>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거나 전자문서 또는 전화를 통해 통보하도록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내부구성원 및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p>
<p>제12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에게 자료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에게 자료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p>	<p>부 칙 1.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p>

참고)

KBS전주총국에서는 KBS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이 2020년 4월 22일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제6조3항(위촉)에서 정당법에 의한 당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되었고, 제6조의2 2항으로 해촉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990. 9. 26. 규정 제386호 (제221차 이사회 의결)
개정 2000. 7. 19. 규정 제722호 (제387차 이사회 의결)
개정 2002. 9. 25. 규정 제824호 (제429차 이사회 의결)
개정 2005. 2. 25. 규정 제981호 (제491차 이사회 의결)
개정 2006. 7. 12. 규정 제1035호(제727차 이사회 의결)
직권개정 2008. 2. 29. 규정 제1072호
직권개정 2008. 10.28. 규정 제1086호
직권개정 2015. 9. 9. 규정 제1307호
개정 2018. 6. 27. 규정 제1384호(제912차 정기이사회 의결)
직권개정 2019. 6. 19. 규정 제1430호
개정 2020.4.22. 규정 제1470호(제964차 정기이사회 의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제90조와 법 **시행령 제64조**,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권개정 2008.5.19.> <직권개정 2015.9.9> <개정 2018.6.27>

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2000.7.19>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7.1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0.7.19>

제4조(세칙제정)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인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7.19>

제6조(위촉) ① 사장은 시청자를 대표 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 제6조의 2에서 규정한 선정위원회를 거쳐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2.9.25.><개정 2018.6.27>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관련 기관 또는 단체
9. 경제단체 <개정2005.2.25.><개정2018.6.27>
10. 과학기술관련 단체<신설2005.2.25.>
11. 문화단체<신설2018.6.27>
12. 인권단체<신설2018.6.27>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27.>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신설 2005.2.25>

③ 제1항의 시청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02.9.25>

1.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위촉될 수 있

다.<개정 2006.7.12. 2020.4.22>

가. 민법상 성년임에도 피선거권이 오직 만 25세 미달의 사유로만 제한되는 국민

나. 민법상 성년자이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의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 외의 다른 피선거권 결격사유는 없는 자

2.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3.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방송사 및 방송물 제작사의 임직원, 방송 광고공사, 광고대행사, 방송기자재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임직원 <직권개정 2008.2.29>

4.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5.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신설 2006.7.12.>

6. 정당법에 의한 당원 <신설 2020.4.22.>

④ 시청자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한다.<신설 2018.6.27>

제6조의2(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단,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는 당연히 해촉된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2. 제6조 제3항에 정한 위촉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시청자위원 또는 시청자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4. KBS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때

5. 기타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해촉사유 발생 즉시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제6조의 3에 정한 선정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해당 위원 해촉에 관한 심사와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해촉은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퇴서 수리로, 제2호는 해촉사유, 해촉일자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갈음한다.

④ 제3항 본문에 의한 해촉 결정시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해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본조에 따라 해촉되는 위원은 현 시청자위원회의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0.4.22.>

제6조의3(선정위원회) 공정하고 투명한 시청자위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정위

원회를 둔다.<신설 2018.6.27>

① 선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시청자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부사장(위원장), 편성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직권개정 2019.6.19.>
2. TV, 보도, 라디오 편성위원회 책임자 각 1인 및 실무자 대표 각 1인

② 선정위원회는 시청자위원 임기 시작 1개월 전까지 구성한다.

<본조 이동 2020.4.22.>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도 제6조 제1항에 의한다.

<개정2005.2.25.> <개정 2018.6.27>

② 사장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19>

③ <삭제 2000.7.19>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역(총)국장은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6.27>

② 지역 시청자위원회는 본사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을 참고하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18.6.27>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위촉되어 있는 방송자문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위촉중인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25)

이 규정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7.12)

이 규정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31)

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8)

이 규정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9.)

이 규정은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27.)

이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임기) 1항은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9.)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22.)

이 규정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녹취 자료

인사말

김은규 전북민언련 공동대표

코로나19 사태로 만나기 쉽지 않은 자리인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정 의철 교수님은 강원도 원주에서 여기까지 와주셨거든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기획한 게 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 과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 부터 법적으로도 모든 방송사들이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실질적 의도는 시청자 권익 제공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돌이켜 보자는 거죠.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제 시청자위원에 참여하신 분들이거나 운영하시는 방송사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같은 경우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 있기에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익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의장

시청자위원회 토론회가 열린다는 것에 대해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를 대변한다기보다는 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모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난 파업 때 민주시청자위원회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온전히 시청자의 말을 대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 선임되는 분들도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시청자위원과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의 역량 강화나 품질 강화를 위해 오늘 이 자리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 (김환표 전북민언련 전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게 된 김환표라고 합니다. 처음 발제문을 부탁받았을 때 고민이 많았지만, 전북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사회자의 말씀과 같이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내용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발제문에서 내용 분석은 빠져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양적 분석 위주로 그리고 방송 3사가 각자 운영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방송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적 기구입니다.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규정이나 방송 프로그램 내용 의견 제시 등을 하는 것이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정의는 많지 않지만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시청자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또는 민주성에 대해 의문이 있었고, 또 시청자위원들의 활동이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정보의 개방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북민언련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시청자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방송사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방송사 내부 구성위원들 역시 시청자위원회 개선이 필요하다는 흐름이 있었고요. 다행히도 이런 흐름이 만나게 되면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방송사들이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을 손보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먼저 운영규정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을 보면 괜찮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담론에 들어가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개선된 부분만 보면 과거에 비해 진보했습니다. 일단 전주MBC가 제일 많이 변했습니다. 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의 내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선임한 이후에 시청자위원들이 하고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지역 시청자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명성,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꽤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JTV전주방송의 경우에는 전주MBC와 운영 규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담론으로 들어가면 몇몇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운영규정 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를 시청자위원회로 선정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지역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 서울 본사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공정한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방송 3사가 시청자위원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전주MBC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운영규정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근거해서 방송 3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공개 현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MBC는 시청자위원회 발언, 답변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JTV전주방송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특별한 공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제대로 공개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우선 KBS전주총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운영규정, 회의록, 위원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천분야와 추천단체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전주MBC 또한 위원 명단이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천분야와 추천단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주MBC는 사실상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로그인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회의록 형태는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속기형입니다. 그러나 JTV전주방송은 의견 요약형이라서 시청자들의 의견이 누락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회의와 관련해서 방송 3사가 매월 일 회 정기적으로 회의하도록 하는 걸 운영규정에 담았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더 회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MBC는 서면회의와 대면회의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회의록에서는 서면회의인지 대면회의인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운영규정과 달

리 회의가 취소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또한 견학을 가거나 감사패를 전달한다던지 회의를 다른 행사로 대신해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미개최한 경우 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사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청자위원회의 다양성 및 대표성입니다. 시청자위원이 시청자를 대표하는 만큼 다양한 시청자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 사별로 운영규정을 보면 KBS전주총국은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한다. 전주MBC는 연령, 성별, 지역성을 고려한다. JTV전주방송도 연령, 성별, 지역성, 전문성까지 고려해 위촉한다고 운영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현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성별 불균형 문제입니다. 남성 위원들의 비율이 대략 7:3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JTV전주방송은 8:2로 성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합니다.

직업별로 보면 과거 시청자위원회를 향한 가장 흔했던 비판이 바로 시청자위원회는 사교클럽, 친목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성된 위원들을 보면 그런 비판이 과거에 나올만 했습니다. 여전히 방송 3사를 살펴보면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총장을 포함한 교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단체나 협회의 대표자들이 그다음입니다. 물론 이제 운영규정을 개선하면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망가 및 전문가 그룹 중심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별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KBS전주총국 같은 경우는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나 협회장 비중이 그 뒤를 이었고요. 이 두 직업군을 합하면 50%가 넘어 편중이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주MBC의 경우 총장과 교수의 비중이 높았지만 2019년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회소외계층, 노동, 인권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고요.

JTV전주방송도 총장을 포함한 교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여기에 경제인이라든지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총장을 포함해 4개 직

업군에 있는 분들이 구성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위원 구성 편중이 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방송법 시행령은 시청자위원회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로 14개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에 보면 각 방송사별로 시청자위원회를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어요. 즉, 제시하고 있는 단체에서 한 분씩만 시청자위원으로 모시면 시청자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먼저 각 방송사별로 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전주MBC는 “시청자위원 추천 단체가 위원을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JTV전주방송 역시 똑같습니다. KBS전주총국의 경우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개 단체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만 보면 방송 3사의 시청자위원 추천 분야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황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문화였습니다. 추천 분야 역시 편중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사회소외계층 분야와 관련된 위원은 빠져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적 약자 등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JTV전주방송 역시 편중이 심한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문화 분야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소비자 보호, 언론 관련, 노동,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서만 위원들을 추천했고 그 외에 학부모, 여성, 청소년, 변호사, 학술시민, 인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2020년까지 한 분도 위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JTV전주방송도 편중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주MBC는 운영규정이 개선된 후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편중된 분야들이 있었지만 2020년 올해 사회소외계층, 노동, 인권 분야에서 새로운 시청자위원들을 위촉해서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전주MBC는 시청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8쪽을 보시면 방송사 별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의 조치 결과 현황인데요, 이거는 지역 방송사가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시청자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도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시청자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주MBC 111건, KBS전주총국 90건, JTV전주방송 77건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KBS전주총국은 2018년 회의록과 비교해서 20건에서 90건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시청자위원들이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었고, 사실상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규정을 손 본 이후에는 어찌 됐든 발언을 하는 위원들이 꽤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청자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각 방송사들이 수용하거나 참고하거나 반론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 뒷부분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자위원들의 평균 출석률인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위원들의 평균 출석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JTV전주방송이 그나마 70% 정도고 KBS전주총국은 50% 미만을 기록한 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회의에 한 번 참석한 경우도 있었고요. 전주MBC도 50% 미만을 기록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내용 분석을 동반한 현황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와 비교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에 새로 만든 운영규정을 준수해서 시청자위원들을 위축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청자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내실화는 만들어 놓은 운영규정만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진행하지 못한 내용 분석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위원들이 다양해지면서 방송국에 요구하는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의견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참고할 것인지, 반론할 것인지는 각 방송사의 결정이겠죠.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이 다양해지면서 방송사에서 시청자위원 의견에 반론하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내용이 토론이 돼서 쪽 이어져야 하는데 의견을 제시하면 반론을 하

고 끝나버립니다. 시청자위원들과 방송사들이 토론하고 의견이 나와야 다른 시청자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반론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1시간 정도의 회의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적극적인 토론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방송사들이 관심을 두고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청자위원 관련해서 출석률이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전주MBC는 시청자위원 출석 관련해서 해촉 규정이 있는데, 다른 방송사는 없어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을 선임했을 때 시청자위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지 방송사 차원에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청자위원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자위원회가 좀 귀찮을 수 있지만 지역방송과 서울과의 관계에서는 방송국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바로 시청자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나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역의 시민사회와 연대할 수도 있고, 지역의 방송사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법적인 기구잖아요? 그리고 내용 분석은 나중에 한 번 진행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JTV전주방송 편성국장 서수권)

발제하신 것 보고, 발제를 잘하셨고, 저희는 JTV전주방송이니까 다른 MBC나 KBS 쪽에 시청자위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표랑 비교해 보니까 저희 시청자위원회가 개선할 점이 많이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나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 한 달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정해서 진행합니다.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뉴스,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 전북의 발견 등 프로그램을 정해서 4회 정도 시청자 위원분들이 보고 오시게 안내를 해서 프로그램을 보시고 보신 것 중심으로 의견을 많이 나누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청자위원 분들은 열심히 보시고 프로그램에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지만 개선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제작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럼 시청자위원뿐 아니라 제작 담당 쪽에서도 팀장, 국장들 간부들이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시키거나, 의견이 제작에 도움이 되겠다하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가능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 시청자 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구성비율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서 시청자위원회 회의나 진행이나 구성이나 부서가 있는데 의견을 나눠서 외부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 (전주MBC 경영국장 이종휴)

김환표 전 사무국장이 발제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 저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었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발제문을 읽어보고 여기 와서 들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시청자위원회를 잘 운영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해왔지만 실제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도 어제 발제문 받고 읽어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로그인해야만이 저희가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방통위에 보고하게 되어있는 약소형 한 장짜리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하자 해서 회의록 공개를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함이 있었는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꾸겠습니다. 실은 회원 가입이 아니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아이디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아래에. 그러나 그것 역시 불편함을 드린다면, 그리고 운영규정을 보니까 이것도 다시 봤는데요.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로그인은 쉽지가 않아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위원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실은 운영하다보니까 어떤 분은 나는 오픈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언젠간 공개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실적에는 그분들 명단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같고요. 왜냐하면 방통위 보고 자료니까요. 요즘 공개하고 있는 회의록은 그분들 직함 등은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운영 실적도 회의록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로그인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서면회의를 했는데 서면회의를 밝히지 않았다.’ 그것도 알아봤어요.

작년 6월까지만 해도 두 달에 한 번은 실제로 하고 한 번은 서면회의를 하는데 왜 그랬냐고 했더니 위원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빠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어쨌거나 계속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면 회의를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참석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참석률이 저조한 편인데요. 사유를 분석해보니 작년에 많이 떨어져요. 출석률이. 임기 말이다 보니 몇 분들이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안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출석률,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제가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수렴하는 게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을 모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석률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회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올해 4월 1일 자로 11분 중 7분이 바뀌었습니다. 7분을 모실 때 어떤 분을 모실까 조금 길게, 깊이 있게 고민을 했었고, 박찬익 노조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번에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 규정 개정된 대로 그대로 시청자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위촉을 했고요. 2017년에 저희가 백일이 넘는 파업을 했었는데, 파업 말미에 박 지부장이 말씀하셨던 민주시청자위원회를 했습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그 당시에 구성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듣고 싶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기자들, 피디들,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시청자위원회를 단발성으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회사가 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제가 느끼던 회사의 시청자위원회 위원들은 전라북도 도민, 전라북도 시청자들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훨씬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날 모신 민주시청자위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7분을 바꾸는데 노동조합과 협의하면서 룹팀으로 고민하고 위원들을 추천 받고 모시는 과정은 좋았다. 개인적 경험도 좋았고 노사 간의 선례도 마련하고 운영 규정대로 실제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민주시청자위원회에서 나와서 말씀해주셨던 분도 이번에 시청자위원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도 관촬았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간부가 아니고 취재 기자였을 때는 시청자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실제로 친목 단체, 친목 모임 이 정도로 구성원들에게도 생각이 되는 모임이었는데요. 지금은 올해 바뀌어져서가 아니고요, 방송사 파업, 방송 뉴스, 기자, 이런 부분이나 영역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들이 엄청나게 바뀌고 높아지면서 저는 실제로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하는 말이나 과정도 많이 달라졌고 내실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감을 느끼고 위원들의 한 마디 할 때 할 때마다 긴장하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지적이나 당부사항, 요청사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취재나 프로그램 아이템을 무궁무진하게 발굴해요. 많이 도움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토론 (KBS전주총국 보도국장 박재홍)

총국장께서 지난 12월에 부임을 하셔서 이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시청자위원회를 몇 번 하면서 느낌이 있거나 봐요. 12월에 보면 시청자위원들이 많이 연임되고, 기간이 끝나면서 계절적으로 정비도 해야 할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적소에 때마침 열린 거 같아요 이번 토론회가. 시청자위원의 정보 개방성이 부족하다. 사교클럽이나 친목회 모임 아니냐는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정 직업 부분에 편중도 있고, 다양한 욕구 충족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청자위원과 방송국 직원 간의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뿐이다. 출석률에 대한 해촉 규정이 없다. 다 새겨들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은 본사 소속이다 보니 본사의 기존 룹이 있고 지역 총국장이 굉장히 중요합니

다. 지역 총국장이 어떤 사람이 부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스타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방송 규정이 방송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 사항은 결국 지역 총국에서 디테일하게 짜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총국장이 중요하고, 이번처럼 의식 있는 총국장이 계실 때 제도적으로 받쳐놓으면 다음 총국장이 왔을 때 흐트러뜨리지 않고 쪽 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보도국장이 된 지 2년 3개월 차 되고 있는데요. 마감 시점도 거의 지났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새로운 변화를 나름대로 주고 싶어서, 전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세 분 정도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신 손주화 처장과, 향토사학자 분하고, 여성 기업인, 여성을 배려 하자해서 추천했고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사가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와 함께 그 반대 측면에 있는 시청자위원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와야 합니다.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몇 분을 제외하고 별로 준비도 안 해오시고, 그럼 왜 시청자위원을 원하냐 하면 아까 말한 사교클럽이나 친목회 개념이 너무 강한 거 같아요. 명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방송에 애정을 가지고 쓴소리 할 수 있는 분들로 올 연말에 정비를 해나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토론 (JTV전주방송 시청자위원 김영기)

들어보면서요, 자료도 받아보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성 할당 이런 부분은 다시 들어가서 시청자 명단을 확인해 봤는데요. 11명 중 2명이 여성이거든요. 비율이 적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영방송이라 시청자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다 열심히 해서 제가 오히려 위축되었습니다. 다들 전투적으로 하더라고요. 내실이 있어요.

저는 90년대 말에 MBC를 해봤고요, 아주 형식적으로.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때는 일년에 회의를 두 번하고 끝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KBS는 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30분~40분 만에 끝나고 술자리 밥자리는 3시간씩 하더라고요. KBS는 그 당시에 2000년 대 초반이니까 노무현 정권 때죠? 회의시간만큼은 성실하게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시청자위원회 회의하고 열린 JTV라고 해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고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얘기들

은 하는데, 어쨌든 JTV가 직업군이 확실히 한쪽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2년 6개월을 했는데 전혀 사교적이지 않아 가지고 서먹합니다. 공적인 거 외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따로 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KBS는 5시에 하니까 끝나고 저녁밥 먹고 가는데 여기는 11시에 하니까 밥 안 먹고 가고. 이런 분위기라서 같이 있는 위원들끼리 사교는 꿈도 꾸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출석률이 아주 높네요. 3사 중에는 출석률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시청자위원회는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여긴 민방이라 회사와 관련된 경영이나 이런 얘기는 시청자위원회에서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정해진 주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은 방송사 측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해나가는 형태인데요.

총장님을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고, 추천 규정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 서울 것을 베끼다 보니 그런 건지. 총장을 굳이 추천하기 애매하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고 그런 걸 보면 관계망 속에서 추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인이 안 된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정당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다시 명단을 찾아봤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JTV도 추천 규정을 바꾸던지 아니면 가능하면 추천 규정에 맞게, 추천 규정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규정은 준수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뒤돌아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여기가 경영이나, 인사 이런 걸 바꾸는 곳이 아닌 이상에야 실제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보완 이런 내용이니까 실질적으로 명백한 한계는 가지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토론 (전주MBC 시청자위원 노현정)

- 토론문으로 대체합니다.

1. 언론운동/언론단체들의 노력으로 시청자위원회 전반의 운영 등이 내실화 되고 있음. 발제문의 내용에도 있듯 시청자운영위원회의 규정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각 방송사별 회의록의 형태에서부터 운영규정, 위원명단, 담당자 공개 등에 있어선 여전히 다른 형태로 공개와 비공개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 시청자가 방송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방송법 등의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방송사내부에서 시청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감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임. 오래전부터 방송이 시작된 이래로 방송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도 존재의 이유를 의심받지 않았음. 원론적인 이야기 이긴 하지만 이제 일방적인 관계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 방송의 쇠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최후의 비방은 시청자 참여뿐이지 않을까 사료됨. 이러한 지점을 인식하다면 시청자 위원회 운영 전반의 내용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음.

2. 2013년 정부위원회 위원 임명 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음. 이에 정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로써 지자체 및 지자체 각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법과 조례 내) 특정성별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음. 시청자위원회의 성별비율에 따른 구성은 변화가 보이긴 하지만 시대의 흐름임을 알고 수용력을 키워야 함.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 정책 및 심의 기구의 성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 권고, 방심위원장에게는 성평등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 젠더 데스크,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성인지 감수성 제고, 젠더이슈 발굴 등 언론사의 전담기구(2019년 5월/ 한겨레신문, KBS/ 성평등 센터 개소 - 성평등한 조직문화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KBS 정책 및 콘텐츠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 등)가 신설됨.

젠더데스크는 젠더 이슈와 관련해 편집국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고 이를 편집국장이나 다른 데스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데스크 결정을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재발 방지책 등을 내놓기도 함.

: 지역방송사에 젠더데스크라는 기구 구성이 가능하면 좋겠음. 어렵다면 시청자위원회의 기능 속에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시청자위원회가 사후 모니터 활동이긴 하지만 사전 기획프로그램 및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관련 뉴스, 프로그램 등 상시적 모니터링, '성인지 감수성' 지닌 콘텐츠로의 변화 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 이런 시도가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단어’에 머무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실과 그 사실을 담은 기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침.

3. 마지막으로 시청자위원의 회의 참여 등 전반에 대한 (회의 참여율을 보고 반성)

: 전주MBC의 경우 출석의무 조항이 있어서 시청자 위원으로서 매우 신경 쓰이는 조항임. 이런 장치는 매우 필요한 조항이며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시청자위원으로서의 역할 고민 (모니터의 방법, 시청자위원의 인식 변화)

: 시청자위원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주일에 지역방송을 얼마나 보는데 대한 고민으로 시작해, 위원이 된 후 시청자 위원회 일정이 다가오면 어떤 방송을 모니터 해야 하는지, 어떻게 모니터 해야 하는지, 나의 기준은 적절한 것인지 나의 비평의 방법은 제대로 인건지, 매월 위원회를 앞두고 하는 고민임.

: 그러다보니 방송에 대한 찬사, 또는 방송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상적 의견, 실효성 없는 의견 제시 등 매월 시청자위원회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의 횟수가 많아지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측도 무척 피로할 것도 같다는 생각도 해 봄.

: 지역방송의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은 사측에게 요구되는 개선점도 있지만, 선출된 시청자 위원들의 방송 전반의 이해를 높여야 함. 본인들의 전문성을 살려 모니터의 수준을 높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평가의 폭을 넓게 하는 역량강화가 요구됨.

: 시청자위원 교육을 체계화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 각 위원들에게 모니터링을 할당하는 방식이나, 방송제작/ 프로그램 구성 등 전반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해 모니터링 수준의 향상도 가져올 수 있음. 이를 통해 시청자위원회의 공익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낼 수 있음.

토론 (KBS전주총국 시청자위원 이영원)

저는 이 토론을 하면서 시청자위원회라는 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시청자위원회는 결국 시청자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조직인데 그렇다면 과연 지역방송을 보는

시청자 분들은 과연 어떤 그룹이냐 하는 걸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언론진흥재단에서는 매년 언론 수용자 조사를 하면서 어떤 매체들을 많이 이용하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젊은 층들은 요새 유튜브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지만 중장년 층은 TV를 이용하는 분이 많고, KBS 같은 경우에 매체 신뢰도 면에서 아직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생각할 때 특히 뉴스 부분에서는 중장년층이 TV를 이용하는 중요도에 50% 이상 나오는 걸로 지금 조사가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지역민들이 뉴스를 볼 때 KBS라는 지상파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들은 과연 누구일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시청자 위원들의 직업별 분류를 보면 대부분 전문직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시청자 그룹들을 분류해 보면 지역방송 같은 경우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어업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노인 분들의 시청률은 거의 50% 이상이 되는데 과연 노인 그룹을 대변할 수 있는 시청자 위원이 있느냐, 특히 요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TV 시청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청 패턴에 변화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에서 이러한 TV 뉴스가 중장년층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노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 구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과연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뉴스나 지역의 현안에 대한 것들, 사실 우리는 젊은인 시각에서 이러한 뉴스 발굴이나 아이템들을 보는데, 실제 지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에 소식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얼마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별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 같은 경우에는 그 시청자 분들이 각 분야별로 나눠서, 예를 들면 보도나 TV, 라디오 매체별로 구별해서 모니터를 매달 한 번씩 모임을 하는 데요. 약 10년 전에 제가 KBS 시청자위원을 하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그 시청자위원회 분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이 그래도 시청자위원회가 젊어지고,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사랑방 역할 같은 하는 게 시청자위원회다 하는 부분은 사실 뭐 부정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만 그러한 분위기는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특히 시청자위원 구성안으로 보면 다양한 그룹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들 KBS 같은 경우는 손주화(시민단체) 위원도 들어왔고요, 또 교사라든지 이러한 그룹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계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들은, 과연 문화계 위원도 필요하시긴 하지만 지역 방송국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청자위원 교육 말씀하셨는데, 방송국 자체에서도 시청자위원들 새로 위촉할 때 시청자위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 같은 것을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간략하게 브리핑 같은 걸 해주시면, 사실 시청자위원회 가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위원들이 있어요, 일종에 지역의 어떠한 친목 모임 같은 분위기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송국 자체 내에서도 시청자위원들을 추천하거나 모실 때 시청자위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어떤 건지, 위촉할 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프로그램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토론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정의철 교수)

제가 경험했던 시청자위원회는 제가 한 5~6년 전에 원주 지역에서 시청자위원 경험이 있었고, 최근 올 연초부터 또 다른 원주 지역의 지상파 방송에서 시청자위원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발제에서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 2016년 사이에 지역 시청자위원회 현황,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학회에서 발표되고 또 한국방송학회에 게재가 됐습니다. 한 2년 반, 3년 전쯤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 지역 방송사 종사자들에 관한 시청자위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도 들어 있고, 그것도 역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6년 전에 제가 있던 첫 번째 시청자위원회가 달라졌던 점 역시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저녁 시간대였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1시가 되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관리하는 방송사 부장급 직원이 있었는데 대단히 세심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위원들이) 만찬에 참석할 건지였어요, 그런데 점심 때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회의가 좀 더 내실 있게 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최근에.

작년에 민연련에서 대전에서 시청자위원회 토론회 할 때 제가 발제했었는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문화도 중요하고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변화도 중요하지만, 또 규정이나 제도도 중요한데, 일단 원주에서는 현재 특정 방송사를 제가 거론은 안 하겠지만 공모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공모를 하면 동시에 노사 동수의 선정위원회가 가동이 되면서 선정위원회를 통한 추천이 이뤄지니까 당연히 참여하는 인원들의 다양성,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내실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위원 구성이 편향적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직도 2020년 뭐 전북지역에서 교수, 단체협회장,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순이었는데 2020년에는 약간 바뀌었지만 여전히 교수 총장이 많았고 또 단체협회장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구성이 계속된다면 조금 더 변화가 되는 모습이 관찮은데 위원 구성이 이렇게 되가지고, 모르겠어요. 전북이나 특정 지역에서는 그게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념적 편향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제계 사람들, 이른바 오랫동안 지역에서 유지들이 많이 참여하면은 불성실한 코멘트, 불성실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편향성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공모절차’, ‘선정위원회의 구성’, ‘노사 동수의 구성’ 이런 것들은 빨리 지금 취하지 않으면, 다른 방송사도 좀 받아들일 거는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일부 지역 방송사에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일반화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거마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서울에서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지역에서 올려야 될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서 지나치게 정치적 의도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자기들 어떤 그런 지지 그룹으로서 유지시키겠다는 의도로 지나치게 지금, 이거 사실 이런 걸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과연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의견, 요즘 뭐 의견이라고 하는 거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런 거 사실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최소한의 교통비를 드리는 방향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과도하게 그것이 마치 어떤 금전적인 혜택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오히려 서울 쪽에서 중앙 방송 쪽에서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100% 정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5~6년 전에 갔던 그 지역 방송사 1층에 그 시청자위원회 회의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위원들이 그 1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3년의 임기. 그니까 1층에서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서 스튜디오도 보고, 방송이라는 게 신문과 다르잖아요? 아나운서, 엔지니어, 기자, PD, 이렇게 다른 분야, 다른 시각, 다른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동을 통해서 방송 제작을 하고, 그러면서 방송은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양성의 시각으로도 방송이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견학이 필요합니다. 방송사도 견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송사를 견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미디어센터라고 지금 전국에 7개, 8개 만들어졌어요, 광주, 부산부터 시작해서 대전, 서울, 춘천, 인천 지역에 방통위가 운영하는 지역미디어센터가 있고 그 외에도 영상미디어센터라고 작은, 작다고 하기엔 그렇지만 도시 규모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미디어센터 또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연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의 교육이 왜 어려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녁식사 할 시간에 거기 가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저녁식사하시면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걸 좀 제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기 사업과 관련된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선정 과정에서 지역의 유지, 지역을 잘 아는 거와 지역에 이해관계가 많은 것은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송과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경찰서나 아니면 소방서에, 또는 시청이나 도청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시청자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이것도 저는 전형적인 교육의 부재라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거죠

시청자위원이라는 거는 크게 봐서 그냥 시청자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 참여 제도 하에서 여러 가지 시청자 평가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게 사실 시청자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고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발제자 선생님한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2020년에도 여전히 시민사회

단체와 단체협회장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전주MBC만 사회 소외계층 노동인권분야에서 새롭게 위원을 구축해가지고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정말 이견 대단히 좀 진일보된 부분이라고 저는 평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추천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 추천제도가 오히려 정말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 계층이 시청자위원회로 진출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지 않은가. 아까 정당에 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도 사실은 왜 정당 가입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면서 막상 우리 사회의 어떤 소수자들이나 사회적 계층, 어떤 취약계층들이 제대로 진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게 아쉽거든요.

첫째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청년층이거든요,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직업이 아니라 연령 때부터 시작하다 보면 물론 연령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과 대학생,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학 가지 않은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하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의 어떤 대표성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20대가 없어요. 지금 새로 구성된 국회에도 20대가 한 명인가 두 명 있다고 그러는데 이견 대단히 좀 편향된, 그러니까 기성세대 중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성세대 중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취업이 어떻게 되고, 정말 생존의 어떤 문제들, 청년들이 겪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1인 가구들의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냥 농담 삼아 1인 가구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미혼모 가정, 한부모 가정,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주류와 다른, 정치적 이념을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소수자에 대해서 둔감하고 이것이 전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시청자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게 과연 시민사회단체 추천으로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가 싶고요.

장애인들, 그리고 이주민들. 지금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를 합치면요 약 150만입니다. 우리 사회 거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시청자 몫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원이나 이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가. 제가 이번 강원도에서 한 번 시도를 한 적 있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몇 년 전에 한 번 시도를 했다가 지금은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혼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 우

리 사회에 어떤 다양성을, 어떤 문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에 대한 대표의 문제, 대표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부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된 게 무슨 직업을 꼭 가져야만 프로페셔널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주부들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교육과 직결돼 있고, 그런데 이게 학부모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애들 교육, 양육, 이걸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상, 일상 속에 문제들, 그런데 이것을 학부모로 분류하고 있어요. 주부들이 하는 일이 학부모들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가에 대한 거, 어떤 일상에서 어떤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민단체 등 추천단체들이 커버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추천단체들을 없애든지,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는 개인이 공모로, 자기가 충분히 공모에 응할 수 있는데 거기에 추천단체 때문에, 저도 사실 고민했거든요. 어느 학계에 요청해야 되냐. 그것도 일종의 서류가 있는 거고 저같이 뭐 나름 학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도 사실 부탁하는 걸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천단체 제도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제 연구에서 드러났던 부분들인데요,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에 있는 언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시청자위원회를 했던 언론학자들, 어떻게 보면 언론의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가 “유지와 학자스러운 경향이 편향적 회의 진행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서민으로 볼 수 있는 위원이 없었다. 연령대가 50대 이상이 다수였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감안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시청자위원회 선발 후 워크숍이나 방송 체험 형식으로 방송 제작이나 편성에 대해 교육하려는 방송사 측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위원회가 유발하는 경우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니까 처음 위원 구성부터 방송사와 잘 아는 그런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친목, 그리고 어떤 네트워킹, 이게 처음의 목적이었

기 때문에 위원들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를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회의를 마치 그분들이 방송제작 되는 걸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시청자 위원부터 그 제작현장을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소외계층 등 사회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위원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각 방송사 경영진의 입맛에 맞는 순응적인 위원 구성이 제일 큰 문제다. 이게 주로 지금 강원 지역의 방송사 현장에 있는 방송인들의 의견입니다. 지역에서 권언유착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시청자 주권 실현’이라는 시청자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얘기하는데 지금 발전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걸 감안해서 이런 점을 우리가 더 변화시켜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밴드 앤 밴드”, 저는 밴드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걸 매개로 해서 일종의 동호회처럼 운영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뭐 골프 모임에 나오라, 이런 어떤 그런 친목 수단으로 열심히 네트워킹을 하고. 그니까 방송에 어떤 그런 품질의 문제, 방송의 어떤 그런 내용이나 정책의 문제에 대한 열정적인 토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겠나, 제가 사실 더 얘기할 게 있는데 특정 사와 관계되는 문제라서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언론 학자인 시청자위원은 그 당시 파업 시기였는데, 파업에 관한 발언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전혀 그 맥락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동의도 못하면서 반대부터 하는 그런 일을 접하고 되게 당황스러웠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계 회사 대표 등이 주로 위원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회의를 주관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건전한 비판이나 세부적인 방송 내용, 그리고 방송 언론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보다는 업계 사람들 간에 또는 업계와 방송사 경영진 간에 친목 단체화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원주에 있는 방송사 간부가 했던 얘기인데, 상층 혹은 50대 이상 위주의 인적 구성이다 보니까 바닥 민심이나 젊은 세대 등 폭넓은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직접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요.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데 방송 진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시청자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들은 적이 없다. 그니까 전해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주로 간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저희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민언련 토론회에서도 발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새로운 부분들을 종합을 했는데요.

첫째는 지금 ‘지역 방송 발전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청자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시청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송에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방송 발전지원법이 좀 더 시청자 참여 지원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송 전체를 맡고 있는 모 교수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방송사 내부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장단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 대표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위원회가 그때그때 구성도 바뀌고 역할에 대해서도 재조정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경영진의 인식변화를 위한, 방송사 경영진이 시청자 참여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방송에 있으니까 시청자 참여에 대해서 잘 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시청자미디어 재단이 지금 각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경영진 대상의 시청자 참여에 어떤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노사 동수로 구성되고, 또 공모 과정에서 제약을 없애야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일단 공모하는 절차에서부터 그런 제약을 받는데, 공모를 받고 그다음에 선정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공모 과정에서부터 우선 추천 단체라고 해서, 물론 이 공모 과정이 생긴 건 저는 대단히 진일보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청자 참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단순히 시청자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평가원 제도가 기업에서 잘 안 이뤄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제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대로 평가 작업들이 이뤄져야겠고 이런 걸 위해서 관련 법 개정,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거기도 제가 뒤에 제안하지만 시청자 참여 지원법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통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 각각 그 발제에도 소개가 됐지만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각 방송사마다 다양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통합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방송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시청자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된 어떤 법적 규정이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규정을 두고, 그리고 각 방송사가 자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각양각색으로 이뤄지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참여 지원법을 중심으로 시청자 참여 지원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청자위원회 활성화는 물론이고, 시청자 평가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시청자를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포함해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꼭 완벽하게 아나운서, 보도 기자, 미디어 PD들이 결합해가지고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만 지역 방송에서 보내야 된다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어떤 미디어 교육을 마치고, 그 시청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고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의 중요성, 어떤 미디어 제작의 어떤 의미, 사회적 역할, 윤리, 이런 것들을 물론 숙지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방송을 통해서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역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만큼 이해가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사태 때 보면 얼마나 많은 돈 낭비됐습니까? 이런 중요한 시청자 참여 제도를 위해서는 예산의 부족 이런 말은 타당하지 않고, 반드시 공적 기금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할 것은 지역 방송사간에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여기 와서 알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경찰, 검찰, 대학 다 교류하고 있어요. 전국 총장협의회 있고. 그런데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 다 각자 노선처럼 활동하는데, 저는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워크숍을 통해서, 시청자위원회도 합동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해서 세 방송사가 같이 모여서 합동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말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박찬익 의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여기 시청자위원 분들, 그리고 방송사에서 오신 관계자 분들 이야기를 총 종합해서 예전부터 갖고 있던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저는 그동안 시청자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선정 공모절차를 거치는 게 매우 좋긴 한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일반 시청자들이 지원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민언련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풀단을 만들자”거든요. 추천단체를 통해서 풀단을 구성을 해놓고, 또 추천하는 시민단체가 일상적으로 시청자위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일정 부분 일 년 정도에 한 번씩 방송 3사가 시청자위원회를 같이 공동으로 공모를 하고 같이 재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정식 절차에 기간이 됐을 때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지금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방송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시청 지역 시청자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이라든지 신문발전기금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각 사나 방송사나 신문사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를 위해서 지원금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면서 그런 어떤 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그리고 각 방송사, 시민단체에서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 발언 (발제자 김환표)

제가 발제하면서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시청자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시청자위원회가 내실화되고 있다

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걸 교수님께서 알아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저는 사실은 다 나온 이야기 종합해보면 그거 같아요. 그니까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운영 규정대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과거보다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에 미흡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디테일하게 손을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놔야 사장이 바뀌고 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시청자위원회 내실화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방송국하고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하고 똑같은 5대 5의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지만 시청자위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방송사 3사에 보는 고민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려울 테고, 손주화 처장(민연련)에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시청자위원들이 이런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걸 보완해서 나중에 하면 될 거 같고요. 시청자위원회의 내실화와 관련해서 정의철 교수님과 조금 다른 내용, 장낙인 사회자님과 좀 비슷합니다. 시청자위원들에 대한 대우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다만 전제조건이 있어요. 정의철 교수님 말씀대로 서울에서 시청자위원들에게 제공되는 대우들은 과감하게 줄여야 해요,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걸 지식노동이거든요. 참석하는 건 1시간 2시간이지만 TV 프로그램 봐야 하죠, 시간 들어야죠,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 대우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제안은 많이 해 주신 거 같아요, 정의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이런 시청자 지원, 시청자위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지금 박찬익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방송국에 돈을 줄게 아니라 방송국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시청자위원회에 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하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시청자위원들이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책임을 많이 줘야지요, 책임을 많이 주면서 동시에 대우도 해줘야 시청자위원회가 어느 정도 방송국의 노력과 더불어서 함께 가야, 시청자위원회가 내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현장 스케치]

